



청각장애인 등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등 국고부담 방안

2019. 12. 12.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사법정책분과위원회 검토 결과>

1. 분과위원회 검토 사항

- ▣ 청각장애인 등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등 국고부담 방안 검토

2. 분과위원회 검토 결과

- ▣ 청각장애인 등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등은 국고로 부담하여야 함

- 수어통역비용 등을 소송비용에 포함시켜 소송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및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의무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 ▣ 대법원규칙 개정으로 국고부담화 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함

-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속기, 녹음, 녹화 및 통역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대법원규칙을 개정

- ▣ 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법 등 법률까지 개정 필요

- 대법원규칙 개정뿐만 아니라 법률 개정까지 병행함이 바람직



I. 검토배경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2018. 9. 19.자 18진정0384900 결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장애인이 재판진행에 있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 또는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민사소송 등에서 수어통역비용을 신청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청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 법원은 청각장애인에게 비용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 수어통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2. 장정숙 의원 민사소송법 개정안(2019. 1. 29. 발의)

<기존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16조(비용의 예납)

- ①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 ②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이 제안된 제3항>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통역·속기·녹음 등에 드는 비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372호, (2019. 1. 29.)]



II. 관련 규정과 실무

1. 관련 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국수어 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금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16조(비용의 예납)

①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②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3조(통역)

①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¹⁾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통역인에게는 이 법의 감정인에 관한 규정²⁾을 준용한다.

1)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라 함은 당사자, 보조참가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등이다. 다만 증인·감정인은 변론에 관여하고 있는 기간에 한하여 그 지위를 유지한다. 민사소송법(2) 제7판(2012)



민사소송규칙

제19조(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 ① 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송달료는 원고(상소심에서는 상소인을 말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
 2.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 다만, 직권에 의한 속기 또는 녹음의 경우에 그 속기 또는 녹음으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3. 증거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등에 대한 여비·일당·숙박료 및 감정인·통역인 등에 대한 보수와 법원 외에서의 증거조사를 위한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여비·숙박료는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다만,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경우에 그 증거조사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4. 상소법원에 소송기록을 보내는 비용은 상소인

형사소송법

제191조(소송비용부담의 재판)

- ①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2.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그 밖의 비용
3.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

2) 통역인에게는 원칙으로 감정에 관한 규정인 감정인의 지정(335조), 감정의무(334조), 기피(336조, 337조), 선서의 방식(338조) 등이 준용된다.



2. 민사재판절차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역비용 부담의 주체

▣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고부담의무)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8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장애인이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로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어 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제4항),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표현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사법기관의 의무(제6항)를 규정하고 있음
- 위 각 조항의 내용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각장애인이 민사재판절차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역비(수어 또는 문자통역³⁾ 등**는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한 내용이므로 그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

▣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 규정 없음)

- 「민사소송법」 제143조는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비용부담의 주체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2016. 2. 3. 개정으로 민사소송법에 ‘진술 보조’ 규정(제143조의2)이 도입되었으나, 이는 ‘장애인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적관계나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3) 법정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문자통역 방법은 속기 화면 공유방식이다. 재판부는 문자통역을 할 속기사를 지정하고 법정스크린을 통하여 문자통역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정시설을 준비한다.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70쪽 참조



을 진술보조인으로 동석시켜 진술을 보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써 장애인이 직접 대동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선정하거나 지원해주는 통역인과는 구별됨

- 한편 실무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재판참여를 위한 통역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민사소송규칙 제19조를 근거로** 청각장애인인 당사자 등에게 그 통역비용에 대한 예납을 명하는 경우가 있음

3. 형사재판절차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역비용 부담의 주체

▣ 형사소송비용 국고부담

- 형사재판의 소송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여 진행함
- 다만 형사소송법 제191조 등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할 수 있음(실무에서 거의 활용되지는 않음)
- 형사소송법 및 관련 규칙에도 수어통역비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III. 연구·검토 결과

1. 규범 충돌 상황과 입법적 해결 필요성

▣ 기존 해석에 따른 수어통역비용 등 부담구조

- 당사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소송비용 항목에 통역인, 속기, 녹음 비용이 포함됨. 위 비용에는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을 가진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속기, 녹음 비용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해 옴

▣ 수어통역 비용의 국고부담화의 근거

- 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에 따른 편의제공의 한 내용으로서 그 비용을 장애인에게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이해됨
- 수어를 국어와 같은 지위에 놓고 사법절차 상 수어통역의무를 규정한 한국수화언어법 제1조, 제16조도 수어통역 비용의 무상성[=미국장애인법상 추가요금



(surcharge) 징수금지]을 전제로 하는 것임

- 위 조항들은 기존의 소송절차법령과의 관계에서 신법, 특별법 위치에 있다고 이해됨

▣ 규범 충돌 가능성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기존의 검토내용

- 법원행정처 발간 장애인사법지원 가이드라인(2013. 7.), 법원행정처 제1기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 보고서(2013. 1. 8.), 국가인권위원회 결정(2018. 9. 19.) 모두 법원의 절차유형을 가리지 않고 수어통역비용의 국고부담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해석에 부합한다는 취지임
- 장정숙 의원 민사소송법 개정안(2019. 1. 29.)은 법률 개정을 통한 개선안을 제시함. 제2기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 검토(2019. 9. 27./ 2019. 10. 25.)에서도 구체적인 입법을 통한 개선방안이 연구, 검토됨

2. 입법의 기본방향과 규범형식, 구체적 범위와 쟁점

▣ 입법의 기본방향

- 소송구조를 통한 해결은 적절하지 않음
-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통역비용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비용 등이 제외됨을 명시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비용 등에 대한 국고부담 원칙 명시

▣ 입법의 규범형식

- 법률개정 전이라도 법원 차원에서 가능한 대법원규칙, 예규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함
- 다만 명시적인 법률 개정을 통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제거할 필요 있음

▣ 입법의 구체적 범위와 쟁점

- 속기, 녹음, 녹화비용: 수어통역 외에도 속기, 녹음과 문자통역, 수어통역 영상



녹화의 경우 비용부담 문제를 포함시킴

- **인적 범위:** 당사자, 증인, 감정인, 전문위원, 소송대리인 등 변론의 직·간접적 참여자를 포함시킴

■ 결론

- **회부 안전에 대한 연구·검토 결과 :** 아래 3. 수어통역비용 등 국고부담화 입법안 제시
- **보론:** 청각장애 등 의사소통 장애 일반에 관한 입법안(방청인에 대한 수어통역 등 포함) ⇨ 추후 계속 논의

3. 수어통역비용 등 국고부담화 입법안

가. 법률 개정 전 대법원규칙(민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 등)을 개정할 경우

1. 민사소송규칙

<개정조항>

제19조(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 ① 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송달료는 원고(상소심에서는 상소인을 말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
 2.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녹음 및 제37조에 따라 녹음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녹화를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 다만, 직권에 의한 속기 또는 녹음의 경우에 그 속기 또는 녹음으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3. 증거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 등에 대한 여비·일당·숙박료 및 감정인·통역인 등에 대한 보수와 법원 외에서의 증거조사를 위한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여비·숙박료는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다만,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경우에 그 증거조사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4. 상소법원에 소송기록을 보내는 비용은 상소인



<신설조항>

제19조의2 (장애로 인한 속기, 녹음 및 통역비용)

- ①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녹음 및 제37조에 따라 녹음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녹화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에게는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통역인에 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하고 통역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조항>

제33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 ① 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의 신청은 변론기일을 열기 전까지 하여야 하며, 비용(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또는 녹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이 필요한 때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 ② 당사자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 또는 녹음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변론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2. 민사소송비용규칙

<개정조항>

제3조(증인등의 일당)

- ①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한다)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 ② 증인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3.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신설조항>

제7조(통역인 관련 형사소송비용의 범위)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통역료 및 그



밖의 비용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2호에서 정한 통역인에 관한 형사소송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4. 형사소송규칙

<개정조항>

제122조의2(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법 제262조의3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인·감정인·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한다)·번역인에게 지급되는 일당·여비·숙박료·감정료·통역료·번역료
2. 현장검증 등을 위한 법관, 법원사무관 등의 출장경비
3. 그 밖에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법원이 지출한 송달료 등 절차진행에 필요한 비용

나. 법률을 개정(관련 규칙 개정 포함)할 경우

1) 민사소송법 등 개정안

1.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143조(통역)

- ①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② 통역인에게는 이 법의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조항>

- ③ 제1항의 통역인 중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하고 통역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으로 조서의 기재 대신한 경우에, 소송이 완결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때에는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양 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폐기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조항>

⑤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녹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민사소송규칙

<개정조항>

제19조(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① 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송달료는 원고(상소심에서는 상소인을 말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
2.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녹음 및 제37조에 따라 녹음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녹화를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 다만, 직권에 의한 속기 또는 녹음의 경우에 그 속기 또는 녹음으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3. 증거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 등에 대한 여비·일당·숙박료 및 감정인·통역인 등에 대한 보수와 법원 외에서의 증거조사를 위한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여비·숙박료는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다만,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경우에 그 증거조사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4. 상소법원에 소송기록을 보내는 비용은 상소인



<신설조항>

제19조의2 (장애로 인한 통역비용 지급기준)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3항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에게 지급할 여비, 일당 및 숙박료는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통역인에 대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조항>

제33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 ① 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의 신청은 변론기일을 열기 전까지 하여야 하며, 비용(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또는 녹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이 필요한 때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 ② 당사자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 또는 녹음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변론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2) 민사소송비용법 등 개정안

1. 민사소송비용법

<개정조항>

제4조(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법률 안에서 같다)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 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 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없는 육로에는 4킬로미터에 5원이내, 숙박료는 1박에 240원 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한다.

제6조(감정등에 대한 특별요금)

감정, 통역(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을 제외한다),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11조(비용의 지급)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 여비와 숙박료 기타 필요한 비용은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지급한다.

부칙 <제336호,1954.9.9>



제17조 본법에 규정한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 기차없는 육로여비와 숙박료의 최고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비용규칙

<개정조항>

제3조(증인등의 일당)

- ①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한다)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 ② 증인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3)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1.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조항>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인·감정인·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2.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그 밖의 비용
3.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

2. 형사소송규칙

<개정조항>

제122조의2(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법 제262조의3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인·감정인·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한다)·번역인에게 지급되는 일당·여비·숙박료·감정료·통역료·번역료
2. 현장검증 등을 위한 법관, 법원사무관 등의 출장경비
3. 그 밖에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법원이 지출한 송달료 등 절차진행에 필요한 비용